

의안 번호	2098	【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예 관한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5. 26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5. 26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6. 9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개정안 공포(' 22. 12. 27.) 및 시행 (' 23. 06. 28)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나이 표시 방식을 정비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“만” 표시 삭제

다. 근거법규

-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개정안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 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나이 표시 방식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행정기본법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